

대전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19가합10867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전고등법원 2022. 7. 13 선고 2021나12696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19가합108675 판결

전문

원고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안현준

피고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지수

변론 종결 2021. 4. 29.

판결 선고 2021. 5.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B, C, D, E, F은 각 82,000,000원, 피고 G, H, I는 각 75,000,000원, 피고 J는 41,000,000원, 피고 K은 6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4.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원고는 세종특별자치시 L에 있는 상가용 집합건물 M(이하 이를 'M'라 한다) 신축사업의 시행자이다.
- 피고들은 원고의 직원들로부터 다음과 같이 출자지분을 (순차)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1	피고 B	N1) 원고의 정관(갑제1호증) 제8조 순번 100→O→B	을제2호증, 갑제1호증의1 순번 12
2	피고 C	P2) 원고의 정관(갑제1호증) 제8조 순번 47→Q→R→C	을제3호증, 갑제1호증의1 순번 47
3	피고 D	S3) 원고의 정관(갑제1호증) 제8조 순번 80→D	을제4호증, 갑제1호증의1 순번 100
4	피고 E	T4) 원고의 정관(갑제1호증) 제8조 순번 12→E	을제5호증, 갑제1호증의1 순번 41

1	피고 B	N1) 원고의 정관(갑제1호증) 제8조 순번 100→O→B	을제2호증, 갑제1호증의1 순번 12
5	피고 F	U5) 원고의 정관(갑제1호증) 제8조 순번 5→F	을제6호증, 갑제1호증의1 순번 17
6	피고 G	V6) 원고의 정관(갑제1호증) 제8조 순번 63→W→G	을제7호증, 갑제1호증의1 순번 106
7	피고 H	X7) 원고의 정관(갑제1호증) 제8조 순번 87→Y→H	을제8호증, 갑제1호증의1 순번 15
8	피고 I	Z조합8) 원고의 정관(갑제1호증) 제8조 순번 122→I	을제9호증, 갑제1호증의1 순번 118
9	피고 J	AA9) 원고의 정관(갑제1호증) 제8조 순번 15→AB→AC→J	을제10호증, 갑제1호증의1 순번 122(중 연번 120)
10	피고 K	Z조합→K	갑제1호증의1 순번 27

나. 원고의 설립경위

○ 주식회사 Z(이하 이를 'Z조합'이라 한다)은 2011. 9. 9. AD을 대표로 설립되었다.10Z조합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분양에서 분양을 받지 못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AE조합과 AF조합11을 구성하였다(을제11, 23호증 및 AG의 증언 참조).

○ AE조합은 2011. 12. 14. 창립총회를 열고, AD을 대표자로 선임하였다(을제25호증 참조).

AE조합은 2011. 말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M 부지인 세종시 AH 부지(대지면적 : 4,669m²)를 분양받았다. 이에 AE조합의 조합원들은 그 무렵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납부하여야 할 위 부지의 분양대금 10%를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하였다.

○ 한편, AF조합도 그 무렵 설립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AI 상가 부지를 분양받았다.

○ AG은 2012. 5. 11. 부동산 개발시행 및 분양업무대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J을 설립하였다(이하 이를 'AJ'이라 한다. 을제23호증 제8쪽 참조).

○ AE조합은 2012. 10. 10. 조합원 121명 중 101명이 출석한 총회에서 출석조합원 전원 동의로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하였다(을제11호증 참조).

- ① 유한회사 형태인 원고를 설립하고, 조합원 전원은 원고의 사원이, 조합의 임원은 원고의 임원이 된다.

- ② M 시행 업무대행자를 Z조합에서 AJ로 변경한다.

- ③ 위와 같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은 M 부지 중 조합원들에게 분배하고 남은 잉여지분을 Z조합에 부여한다.

○ 원고는 2012. 10. 17. 정관을 작성, 시행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 원고는 2014. 1. 16. 이 사건 정관을 공증인AK사무소 등부 2014년 제813호로 인증받았다(갑제1호증 참조).

이 사건 정관에는 원고의 직원들이 명시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정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관

제9조(출자증권)

회사는 사원의 지분에 관하여 출자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

제10조(사원명부)

본 회사는 사원명부를 비치하여 정규영업시간 내에는 사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원명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 각 사원의 성명 및 주소

나. 각 사원의 보유지분의 종류와 수

다. 지분취득일

제11조(출자 지분의 이전 및 담보권설정)

가. 사원은 대표이사의 서명동의 없이는 출자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나. 양도에 의하여 출자지분을 취득한 자는 당해 출자지분의 취득사실에 관하여 회사의 사원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 양도 이외의 방법으로 출자지분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그 취득사실에 관하여 회사의 사원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라. 출자지분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하거나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설정 및 해지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사원명부에 등재 또는 말소신청하여야 한다.

마. 출자지분의 이전이나 출자지분에 대한 질권의 설정 및 해지는 그것이 사원명부에 등재되거나 말소되지 않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다. M 신축사업의 진행

○ 원고와 AJ은 2013. 1. 31.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AJ은 원고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M 시행 및 분양업무 뿐 아니라 원고 직원들의 출자지분 관리업무를 대행하였다.

○ 원고의 직원들은 2013. 1. 23.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납부하여야 할 M 부지의 분양대금 40%를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하였다. 이에 위와 같이 출자지분 양수계약을 체결한 피고들은 다음의 표와 같이 분양대금 상당액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을제1호증의2 참조).

1	피고 B	2014. 4. 26.	33,739,770	같은 날 지분양수인 O가 납부한 분양대금 반환
2	피고 C	2015. 1. 20.	33,739,770	같은 날 지분양수인 Q이 납부한 분양대금 반환
3	피고 D	2013. 1. 14.	26,991,820	
4	피고 E	2013. 2. 26.	26,991,820	
5	피고 F	2013. 2. 22.	26,991,820	AM 명의로 송금
6	피고 G	2013. 12. 19.	30,928,120	2013. 12. 18. 지분양수인 W이 납부한 분양대금 반환12) 을제1호증의2의 구분 AQ호 G 입금내역은 그 일시를 고려할 때 원고의 직원 AR의 지분을 1차로 매수하였다가 AS에게 매도한 G의 입금내역이므로, 이 사건과 무관하다(을제1호증의1 연번 67 참조).
7	피고 H	2013. 12. 24.	30,928,620	2013. 12. 18. 지분양수인 Y가 납부한 분양대금 반환
8	피고 I	2013. 1. 16.	24,742,500	AN 명의로 송금
9	피고 J	2013. 1. 9.	26,991,820	AB 명의로 송금
10	피고 K	2013. 1. 21.	20,243,860	AO, AP회사 명의로 송금

피고들은 이 과정에서 원고 대표이사 AD 명의로 된 출자지분 및 사원등록 확인증서를

취득하였다(이하 이를 '사원등록 확인증서'라 한다. 을제12호증 내지 제20증 참조).

○ 원고는 M를 신축하고, 그 분양을 완료하였다. 이에 원고는 사원들에 지분에 따라 이익배당을 2회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피고들은 다음의 표와 같이 AJ로부터 1차 이익배당금을 지급받았다(갑제3호증 참조).

1	피고 B	2016. 4. 5.	82,000,000
2	피고 C	2016. 4. 5.	82,000,000
3	피고 D	2016. 4. 5.	82,000,000
4	피고 E	2016. 4. 6.	82,000,000
5	피고 F	2016. 4. 5.	82,000,000
6	피고 G	2016. 4. 5.	75,000,000
7	피고 H	2016. 4. 5.	75,000,000
8	피고 I	2016. 4. 7.	75,000,000
9	피고 J	2016. 4. 5.	41,000,000
10	피고 K	2016. 4. 6.	61,000,000

라. 관련 분쟁의 경과

○ 원고는 2016. 5.경 AJ에 대행업무를 중지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을제23호증 제7쪽 참조).

나아가 원고는 피고들이 소지하고 있는 AD 명의의 사원등록 확인증서가 위조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2차 이익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이에 피고 B, C, D, G, H, J는 원고를 상대로 2차 이익배당금 지급을 위한 사원총회소집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대전지방법원은 2016. 7. 25.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6비합32호 결정. 갑제2호증의1 참조).

- 위 피고들이 지분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원고 대표이사의 서면 동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위 피고들이 제출한 사원등록 확인증서에 날인된 인영은 원고 법인 인감도장 인영과 다르다).
-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사원으로서의 지위를 대항할 수 없으므로, 위 신청은 부적법하다.

○ 위 피고들은 위 2016비합32호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다. 그러나 대전고등법원은 2017. 1. 19. 제1심 결정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위 피고들의 항고를 기각하였다(대전고등법원 2016라257호 결정. 강제2호증의2 참조).

○ AD은 AG을 피고들의 사원등록 확인증서를 위조했다는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대전지방법검찰청 검사는 2018. 4. 4. AG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강제1 내지 4호증, 을제1 내지 23, 25, 26호증, 증인 A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피고들은 출자지분을 양수하면서 이 사건 정관 제11조 가항에 따라 대표이사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의 사원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고의 업무를 대행한 AJ에 의하여 피고들에게 1차 이익배당금이 지급되었다.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위 이익배당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피고들은 2014. 1. 16. 인증된 정관에도 사원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2013. 12. 말까지 출자지분을 인수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 피고 E은 2012.경 T으로부터, 피고 F은 2013. 1.경 U로부터 각 출자지분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T은 2012.경 AT에게, U는 2012.경 AU에게 각 출자지분을 양도하였다. 그와 같은 사실은 원고의 2012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 E, F은 원고 대표이사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T, U가 이미 제3자에게 양도한 출자지분을 이중으로 양수하였다.

○ 피고 I는 장인인 AN으로부터, 피고 K은 부친인 AV으로부터 각 지분을 양수받았다. 그런데 AN과 AV은 AF조합의 조합원이었고 AE조합의 조합원은 아니었다. 원고는 피고들 주장과 같이 AF조합으로부터 지분을 양수받은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 I, K은 원고 대표이사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무권리자로부터 출자지분을 인수받았다.

나. 대표이사 서면동의 관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쟁점 ○ 피고들이 소지하고 있는 사원등록 확인증서가 원고의 대표이사 AD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인지 문제된다.

2) 판단 ○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출자지분을 양수함에 있어 원고 대표이사의 서면 동의가 없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 을제1호증에 따르면, 피고들은 모두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다.13) 변론 전체의 취지(세종세무서의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포함)에 따르면, 피고들은 2014년 이후 원고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이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분양대금을 입금한 시기와의 일치한다).

- 만약 피고들의 출자지분 양수에 AD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면, AD로서는 이를 확인하고 충분히 시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을제1, 24호증 등에 따르면, 피고들 외에도 원고의 설립 당시 사원으로부터 출자지분을 양수한 사원들(AW, AX 등)이 존재한다. 그 중 AW와 AX도 피고들이 소지하고 있는 사원등록 확인증서와 동일한 인영이 날인된 사원등록 확인증서를 소지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이들에 대하여 사원의 지위를 다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특히 AG의 증언 및 을제1호증에 따르면, 원고의 설립 당시 사원으로부터 출자지분을 양수한 사원들 중 AY, AZ, BA, AU, AT은 AD과 친,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14)갑제1호증 및 을제1호증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이 사건 정관에 사원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피고들과 같이 원고로부터 이익배당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이들에 대하여도 사원의 지위를 다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증인 AG의 증언에 따르면, AD이 사원등록 확인증서에 직접 날인하였고, 그 도장 역시 직접 선택하였다.

즉, 출자지분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AG이 원고의 전무이사 BB에게 지분 양수인의 성명 등이 기재된 사원등록 확인증서를 전달하면, BB은 AD의 날인을 받아 이를 다시 AG에게 돌려주었다. AG은 이를 해당 지분 양수인에게 교부하였다.

AD이 AG과 함께 사무실을 사용하면서15)AG의 대행업무를 관리, 감독할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AG의 증언은 그 신빙성이 높다.

- 증인 AG의 증언에 따르면, 원고는 2013. 1.경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추가로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하였으나, 원고의 설립 당시 직원들 중 대다수는 원고에서 탈퇴하기를 희망하였다.16) 실제로
을제1호증에 따르면, 원고의 설립 당시 직원들은 대부분 원고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인다.

AG과 함께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원고를 운영하였던 AD 역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AD은 피고들의 직원등록 확인증서를 위조했다는 등의 혐의로 AG을
고소하였으나, 대전지방법검찰청 검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 갑제2호증에 따르면, 원고의 인감도장의 인영은 직원등록 확인증서의 인영과 불일치한다.17) 그러나
AD의 주장18)에 따르면, AD이 AJ에 업무 처리를 위하여 교부한 원고 대표이사의 인감도장은
원형이다. AD의 주장에 따르면, AD이 (인감도장과 별도로) 피고들의 직원등록 확인증서에
날인된 것과 동일한 각진 도장을 직접 소지하면서 날인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19) 이 사건
정관이 2014. 1. 16. 인증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정관의 문언상 이는 2012. 10. 17. 작성된
정관을 그대로 인증받았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정관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원고의
사원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E, F에 대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쟁점 ○ 원고의 설립 당시 직원인 T, U가 이미 자신의 출자지분을 AT, AU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고 E, F은 T, U로부터 출자지분을 양수할 수 없는지 문제된다.

2) 판단 ○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 E, F이 출자지분을 취득할 수 없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 갑제5 내지 7호증에 따르면, T, U가 2012.경 이미 AT, AU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 그러나 을제1호증에 따르면, AT, AU는 T, U의 출자지분이 아니라, Z조합의 출자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20) 나아가 AD은 2013. 1. 9. AT, AU가 납부하여야 할 분양대금 각

33,739,77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21) 반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E은 2013. 2. 26., 피고
F은 2013. 2. 22. 원고에게 각 분양대금 26,991,820원만을 납부하였다. 이는 T, U가 이미 원고에게

분양대금 중 6,747.950원을 납부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22달리 AT, AU가 T, U에게 출자지분의 대가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고려할 때, AT, AU가 T, U의 출자지분을 양수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 을제27, 29 내지 31호증을 고려할 때, 피고 E, F은 T, U와 출자지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T, U의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교부받았다.

특히 을제27호증의1에 따르면, T이 피고 E에게 교부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는 '생활대책용지 매매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T이 피고 E에게 자신의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명백하다.

반면 갑제5, 6호증에 기재된 T, U의 성명 옆에는 '공주세무서'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이례적이다. 또한 T, U가 매도의 의사로 갑제5, 6호증을 작성하였음을 추가적으로 증명할 자료(예를 들면 인감증명서 등)도 없다.

- 을제24호증을 고려할 때, 원고의 사원으로부터 출자지분을 양수받은 사람은 AD 명의의 사원등록 확인증서를 교부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을제1호증의2, 15, 16호증을 고려할 때, 피고 E은 2013. 2. 26.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같은 해 3. 8. 사원등록 확인증서를 교부받았다. 피고 F 역시 2013. 2. 22.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같은 해 3. 8. 사원등록 확인증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AT, AU가 분양대금을 납부한 무렵 사원등록 확인증서를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 I, K에 대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쟁점 ○ 피고 I, K은 출자지분이 없는 AN, AV으로부터 출자지분을 양수하였는지 문제된다.

2) 판단 ○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AN, AV이 출자지분이 없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AE조합은 원고를 설립하면서, 잉여지분을 Z조합에 부여하였다.

- AN, AV은 AF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본래 AF조합의 출자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그런데 증인 AG의 증언에 따르면, AF조합과 AE조합은 서로 출자지분의 교환을 희망하는 조합원들이 있을 경우 이들의

지분을 서로 교환하였다. 그러나 AE조합의 조합원 중 AN, AV이 보유하고 있는 AF조합 출자지분과 교환을 희망하는 조합원은 없었다.²³⁾이에 Z조합은, AE조합으로부터 부여받은 원고의 잉여지분 중 AN, AV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AN, AV에게 부여하였다. 대신 AN, AV은 AF조합의 출자지분을 포기하였다(위 증언에 따르면, Z조합은 원고의 지분을 일부 상실하는 손실을 입고, AF조합은 AN, AV에게 출자지분을 부여할 의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는다. 그런데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AF조합 역시 잉여지분을 Z조합에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²⁴⁾이와 같은 방법으로 Z조합과 AF조합의 이해관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 결국 AN, AV은 Z조합으로부터 출자지분을 취득하였다.

○ 나아가 AN을 대신하여 사위인 피고 I가, AV을 대신하여 자인 피고 K이 각각 Z조합으로부터 직접 출자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을제1, 9, 19, 20호 참조).

○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이종록

판사차은주

판사최광진

1) 원고의 정관(갑제1호증) 제8조 순번 100

2) 원고의 정관(갑제1호증) 제8조 순번 47

3) 원고의 정관(갑제1호증) 제8조 순번 80

4) 원고의 정관(갑제1호증) 제8조 순번 12

5) 원고의 정관(갑제1호증) 제8조 순번 5

6) 원고의 정관(갑제1호증) 제8조 순번 63

7) 원고의 정관(갑제1호증) 제8조 순번 87

8) 원고의 정관(갑제1호증) 제8조 순번 122

9) 원고의 정관(갑제1호증) 제8조 순번 15

10) 을제23호증 제7쪽 참조

11) 정관상 명칭은 'AL조합'이지만(을제26호증 제3쪽), 당사자들이 통칭하는 바와 같이

'AF조합'이라 한다.

12) 을제1호증의2의 구분 AQ호 G 입금내역은 그 일시를 고려할 때 원고의 사원 AR의 지분을 1차로 매수하였다가 AS에게 매도한 G의 입금내역이므로, 이 사건과 무관하다(을제1호증의1 연번 67 참조).

13) 이 사건 정관 제11조 나항에 따르면 양도에 의하여 출자지분을 취득한 자는 당해 출자지분의 취득사실을 회사의 사원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14) AY은 AD의 사돈, AZ은 AD의 조카, BA는 AZ의 배우자, AU, AT은 AD의 자녀이다[녹취서(증인 AG의 증언) 제6쪽 참조.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별다른 반대신문을 하지 않았다].

15) 을제23호증 제4쪽 참조. AD은 임원 없이 (AJ과 함께 사용하는) 사무실에서 대표사원 자리를 두고 이를 사용하였다.

16)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자본력이 부족한 Z이 개발 과정 도중 분양받을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사례는 거래관행상 적지 않게 발생한다.

17) 을제23호증 제4쪽에 따르면, 원고 대표이사의 인감도장은 원형이다.

18) 녹취서(증인 AG의 증언) 제17쪽

19) 사원총회소집허가 신청은 신청인인 피고들이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반면, 원고가 피고들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들이 원고의 사원이 아님을 증명하여야 한다.

20) 을제1호증 순번 122 중 연번 116 및 118

21) AT, AU가 취득한 Z조합의 출자지분은 1차매수인이 없으므로, 분양대금의 10% 역시 AD이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D은 33,739,930원을 지급하였다.

22) 원고의 사원으로부터 출자지분을 인수하려는 사람은 원고에게 지급하는 분양대금과 별개로 원고의 사원에게 출자지분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을제1호증을 고려할 때, 피고 E, F은 T, U에게 이들이 이미 납부한 6,747,950원을 포함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23) AE조합의 조합원들은 33m² 또는 36m²의 상가를 분양받을 권리를 취득한 조합원인 반면, AN, AV 등 AF조합의 조합원들은 27m²의 상가를 분양받을 권리를 취득하였다. 따라서 AE조합의 조합원들이 자신의 지분을 AF조합의 조합원 지분과 변경하면 지분의 손실을 입는다.

24) 을제11호증 제3쪽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1차 토지분양에서 분양을 받지 못한 4개 조합

중 AE조합을 제외한 3개 조합은 잉여지분을 조합구성 주체 당사자(Z조합)에게 처분하였다.

위 3개 조합은 Z조합이 구성한 AF조합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AE조합과 AF조합 모두 위와 같이 1차 토지분양에서 분양을 받지 못한 4개 조합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